싱가포르의 무역금융: 실무적 시사점

Dr Alexander Ressos, TEP
Attorney-at-Law (Switzerland and Germany),
Solicitor (England & Wales and Hong Kong)
Of Counsel, KGP Legal LLC
alexander.ressos@kgplegal.com.sg
www.ressos.com.sg

트레이더에게

오늘날 싱가포르에서 금융을 구하는 트레이더는 10년 전의 심사를 훨씬 넘어서는 수준으로 지배구조와 내부통제를 점검받을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2020년 규약은 이를 비례적으로 적용하는 은행들에게도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신뢰할 만한 이사회, 독립적인 위험통제,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보여줄 수 없는 트레이더는 은행 한도에 대한 접근이 좁아질 것입니다. 투명성에는 상업적 가치도 있습니다. 은행은 제공받는 정보의 질에 따라 여신의 가격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전자 서류를 위한 법적 인프라는 이제 갖추어졌습니다. 선하증권과 창고증권을 공인된 플랫폼으로 옮기는 트레이더는 거래 상대방의 서류 사기에 대한 자신의 노출을 줄이고, 은행으로부터 더 나은 조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준거법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싱가포르법과 영국법은 전자양도성기록을 인정하지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만 다른 많은 관할권은 그렇지 않으므로, 그러한 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거래는 지배 소지인에게 다른 곳의 법원이라면 집행을 거부할 권리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은행 및 기타 대주에게

은행은 2020년 사기 사건들이 드러낸 위험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위조되거나 중복된 서류, 가공의 매출채권, 순환 거래, 공개되지 않은 부채가 그것입니다. 등록부와 선하증권 진정성 확인은 이러한 위험을 줄이지만 없애지는 못합니다. *Winson Oil* 판결은 사기 예외를 은행에 유리하게 명확히 했지만, 지급을 거절하는 은행은 여전히 증거로써 수익자의 사기나 무모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시장에 진입하는 비은행 대주는 자신이 등록부와 규약의 밖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에 상응하는 통제를 스스로 구축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싱가포르에서 원자재 금융 구조화하기

- 트레이더의 지배구조를 평가합니다. 이사회 구성, 의장과 최고경영자의 분리, 독립적 위험통제, 감사받은 재무제표, 특수관계인 거래를 확인합니다.
- 환매, 재매입, 할인 약정과 물품의 물리적 이동이 없는 거래를 포함하여 트레이더의 다른 금융에 관한 정보를 빠짐없이 확보합니다.
- 거래가 기준금액을 넘는 경우 무역금융 등록부에 등록하고, 가능한 경우 선하증권 진정성 확인을 이용합니다.
- 권원서류와 운송서류는 대주의 지시식으로 또는 백지배서된 형태로 받고, 가능하면 전자거래법 Part 2A에 따라 인정되는 전자 형태로 받습니다.
- 선하증권 대신 보상장을 받는 경우에는 선하증권 사본이 첨부되고, 신용도 있는 발행인이 발행하며, 상환 기간이 짧은 경우에만 수용합니다.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 독립 검사기관이나 담보관리인을 통해 재고를 검증하고, 저장 사업자가 트레이더로부터 독립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매출채권의 모든 양도를 채무자에게 통지하고, 채무자의 서면 확인과 지급 약정을 받습니다.
- 금융 대상 물품을 헤지하는 경우 트레이더 및 그 브로커와 3자 계약을 체결합니다.
- 모든 당사자, 선박, 경로에 대해 제재 및 무역 기반 자금세탁 위험을 심사합니다(제H편 제III장 및 제IV장 참조).
-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 중재 또는 싱가포르 법원 관할을 정하여 싱가포르법이나 영국법에 따라 거래를 문서화합니다(제F편 제II장 및 제III장 참조).

Disclaimer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It is based on publicly available sources as at its date of publication. These sources have not been independently verified against licences, regulatory registers or the records of the entities concerned. It is not legal, tax, financial or investment advice. Nor is it a recommendation to invest in, transact with or use the services of any entity mentioned. Law and regulation change frequently, so the content may be incomplete or outdated.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Dr Alexander Ressos and the publisher of SingaporeIQ exclude all liability for loss or damage arising from the use of or reliance on this article. Readers should obtain advice on their specific circumstances before acting or refraining from action.

Names and trademarks of the entities discussed belong to their owners and are used for identification only. Their mention implies no endorsement, affiliation or allegation of wrongdoing.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Corrections and updates: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This article may be quoted with attribution to SingaporeIQ (SingaporeIQ.com). Reproduction in full and any commercial use require prior written consent. The Legal Terms at https://singaporeiq.com/legal-terms apply.

Author contact: Dr Alexander Ressos, TEP ·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